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
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오을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5. 12. 8. ~ 12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0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

구 분	고도 장애	중등도 장애	경도 장애
월 지급액(천원)	1,296	954	626

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

구 분	고도 장애	중등도 장애	경도 장애
월 지급액(천원)	2,308	1,792	1,44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계지원금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10, 별표 1 제3호 및

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
및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10(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「통계법」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<u>10만원</u> 을 지급한다.	제9조의10(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5만원</u> --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